

조선 태종의 권위 확충

남지대*

-
- | | |
|---------------|-----------|
| 1. 머리말 | 4. 세자의 朝見 |
| 2. 傳位하려다 그만둠 | 5. 맷음말 |
| 3. 원단 기우제의 告天 | |
-

초록: 왕권 확립의 기반을 굳힌, 태종은 전위소동으로 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한 짐을 덜고 즉위과정의 묵은 허물을 하늘에 고함으로써 해소하였으며, 세자의 조현으로 왕으로서 권위를 확충하였다.

1406년(태종 6) 8월 전위 소동은 태종이 1차 왕자의 난의 짐을 덜기 위해 벌인 것이었다. 그 8월이 왕자의 난 이후 한양에서 처음 맞는 8월이었다. 태종은 세자에게 전위하겠다고 하여, 왕자의 난으로 얻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종친 공신 대간 백관의 반대에, 모후 신의왕후의 신령함을 드러내며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바로 그 날 전위의 뜻을 접었다. 그 와중에서 서모 신덕왕후의 제사를 왕으로서 처음 지냈고, 전위의 뜻을 접은 다음 날에 방식 방변의 제사를 지냈다. 8월 말 재위에 대한 태조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전위 소동을 벌여 온 신료와 인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왕으로서 처음으로 서모 신덕왕후와 죽인 이복동생들을忌日에 제사지냈으며, 재위에 대한 태조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태종은 1차 왕자의 난으로 빚은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었을 것이다.

1407년 다시 심한 가뭄이 닥쳤다. 이에 태종은 하늘이 자신의 지난 잘못에도 천명을 내렸으니, 이미 왕이 된 지 여러 해 된 지금까지 재이와 가뭄으로 백성을 굶주리고 병들게 하지 말라고 하늘에 죄와 허물을 고하여 용서를 빌었다. 천명받은 군주로서 심한 가뭄을 당하여 백성의 굶주림을 걱정하고 아파함으로써, 태종은 백성을 위하는 군주로서 권위를 확충하였다.

세자의 조현은 황제가 인정한 세자임을 온 천하에 밝게 드러내었다. 세자의 위상이 더욱 굳어지고 역할이 커짐에 따라, 태종의 왕으로서 위상은 그만큼 더 안정되고 권위는 확충되었을 것이다.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렇게 태종의 왕위는 재확인되고 왕으로서 권위는 확충되었다. 그 한 증거가 1408년 정월 초에 서무를 모두 육조로 돌리어 왕 중심의 육조체제가 내용을 갖춘 것이다.

핵심어 : 태종, 권위 확충, 전위 소동, 고천, 천명 군주, 세자 朝見

1. 머리말

태종은 1405년(태종 5) 10월 한양으로 환도함으로써 왕권 확립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글에서는 한양 환도 후 1408년 5월 태조 죽음까지를 태종의 권위 확충을 축으로 삼아 검토하려 한다.

태종의 왕권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즉위 과정의 명분 없음으로 인하여 왕위가 취약하였고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려 애썼으나 불안정하였다고 보았다.¹⁾ 따라서 태종의 왕권에 대한 연구는 왕권강화 시도나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왕권강화 노력이 성공하여 태종이 왕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그 권위를 확충하여 갔다는 관점에서 태종의 정치를 검토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필자는 태종은 1401년(태종 元) 6월에 明帝의 諧命을 받았고, 1402년 11월 조사의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태조가 태종의 재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1403년 4월 명 成祖로부터 고명을 다시 받아서 그 왕위와 왕통을 정당화하였음을 검토하였다.²⁾ 이후 태종은 1404년 8월 세자를 책봉하고, 10월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였고 대표적 훈칙 李居易 李尙 부자를 축출한 뒤에 1405년 초에 육조 중심의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심한 가뭄에 잘 대처하며 10월에 한양으로 환도함으로써 그 왕권이 확립하였음을 정리하였다.³⁾

1) 崔承熙, 1991 「太宗朝의 王權과 政治運營體制」, 『國史館論叢』 30, 국사편찬위원회[2002 『朝鮮初期 政治史研究』(지식산업사)에 재수록]

2) 남지대, 2013 「조선 태종의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 『한국문화』 6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문화연구원

3) 남지대, 2015 「조선 태종의 왕권 확립」, 『역사문화연구』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

이제 1408년 5월 태조 죽음까지의 정국을 검토하여,⁴⁾ 왕권 확립의 기반을 구축한 태종이 그 즉위과정에서 빚어낸 명분의 제약을 벗고 더욱 권위를 확충하였음을 확인하려 한다. 검토 대상은 1406년 8월의 전위하려다 그만둔 일, 1407년 가뭄과 원단 기우제에 네 가지로 告天한 것, 1407년 9월에서 이듬해 4월 초까지의 世子朝見, 1408년 1월 의정부 서무를 육조로 옮기려 한 제도 개혁 등이다.

2. 傳位하려다 그만둠

태종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다 그만둔 일은 1406년과 1409년에 있었다. 첫 번째는 태종 6년(1406년) 8월 18일~26일에 걸쳐 있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를 왕위·왕권의 취약성, 명분·정통성의 결여와 관계있고, 반대하는 여론을 일으켜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한편으로 禪位를 바라는 反王勢力を 노출시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다.⁵⁾ 이는 통설이 되어 있다. 필자도 태종의 집권이 명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왕위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왕자의 난에서 정국을 주도하던 개국공신과 이복동생들을 죽인 것과 형 정종을 압박하여 세자가 되고 선위를 받은 것은 회복할 수 없는 명분의 허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태종은 이러한 명분의 허물을 의식하여 세자가 되어 즉위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의 명분을 내세웠고, 또 태조의 인정을 받아 정통성을 갖추려고 적극 노력하였음을 검토하였다.⁶⁾ 이제 전위 소동을 검토하여 그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의 짐을 덜려는 태종의 노력이었음을 밝히려 한다.

구소(투고)

- 4) 태조의 죽음에서 끊은 것은, 태조가 죽음으로써 태종의 왕으로서 위상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 뒤 태종이 3년 상을 고집하면서 정치운영도 바뀌기 때문이다.
- 5) 崔承熙, 2002 「太宗朝의 王權과 國政運營體制」,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지식산업사, 69-70면. : 「太宗末 世子廢立事件의 政治史的 意義」, 같은 책, 107-8면.
- 6) 남지대, 2014 「조선 태종의 즉위과정과 내세운 명분」, 『역사와 담론』 69, 湖西史學會.

태종이 이때 전위하려 한 명분은 災異가 자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태종실록』에서 재이 관련기사를 찾아보면 1406년의 재이는 1405년 보다 특별히 찾았던 것 같지는 않다. 전과 다른 특징을 찾아보면 샛별이 낮에 보이고 부엉이가 경복궁에서 울었다는 정도이다. 또, 태종은 즉위 이래 재이를 하늘이 천명 받은 군주에게 보이는 譴告로 받아들여 적극 대처하여 왔다. 1406년 7월 중순에 근신들과 재이 등을 논의하였으나, 심각해 보이는 내용은 없다.⁷⁾ 그리고 태종은 13세로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은 世子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종이 내세운 명분인 재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태종은 전위할 만한 마땅한 명분이 없고 실제로 전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태종이 전위하려고 한 것은 왕으로서 풀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태종이 한양으로 환도함으로써 왕권을 확립하였다고 보는 필자에게는, 그것이 1차 왕자의 난에서 빚은 폐륜의 짐으로 보인다. 1406년 태조의 나이는 72세였고, 1차 왕자의 난에서 죽인 세자 방석이 살아있다면 25세였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가 살아있을 때 왕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받고, 이복동생들을 죽인 폐륜의 짐을 덜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1406년은 왕자의 난 이후 '漢陽에서 8월을 보내는 첫해'였다.⁸⁾ 1차 왕자의 난은 8월 말에 있었다. 태종이 즉위과정에서 빚은 폐륜의 짐을, 한양으로 돌아온 첫 해에, 부왕 태조가 살아있을 때 풀어버리지 못한다면 더욱 더 벗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환도한 뒤 태종과 태조의 관계는 한층 더 좋아졌다. 태종은 태조를 위해 德壽宮을 지어 4월 말에 완성되었다.⁹⁾ 5월 초 태조의 嫫 元氏를 誠妃로 봉하였고,¹⁰⁾ 6월 중순에 태종이 덕수궁에 나아가 誠妃의 책보를 올리는 책봉의례를 거행하였다.¹¹⁾

7)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7월 무술 與近臣議雷震災異卜筮等事

8) 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8월에 있었고, 1399년(정종 1) 2월 말에 松都도 천도하였다가, 1405년(태종 5) 10월에 한양으로 환도하였다.

9) 『태종실록』 권 11, 태종 6년 4월 戊子(28일) 德壽宮成.

10) 『태종실록』 권 11, 태종 6년 5월 신묘(2일) 封太上王宮嬪元氏爲誠妃, 柳氏爲貞慶宮主. (중략) 太上聞元氏封妃 喜形於色.

새 궁궐을 지어 드리고 늦게 들인 후궁을 妃로 봉하여 책봉의례를 거행함으로써, 태종은 태조에게 정성을 다한 셈이다. 태종은 8월 3일(기축) 죽은 世子 芳碩을 昭悼君으로, 撫安軍 芳蕃을 恭順君으로 追謚하였다.¹²⁾ 다음 날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였고,¹³⁾ 한가위(신축)에도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였다.¹⁴⁾ 한가위 문안 때에 다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이 태종이 바라던 대로 풀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왕이 되기 위해 이복동생을 죽인 짐을 벗으려고 하면, 그 짐으로 얹은 모든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태종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것이 바로 전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위하겠다 하여 소동이 벌어진 날이 8월 18일(갑진)이다. 그날 실록에 ‘처음에’ 태종이 재이가 자주 보이는 까닭에 세자에 전위하려고 몰래 閔霽 河峯 趙英茂 李叔蕃에게 고하였는데, 모두 불가하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⁵⁾ ‘처음’은 한가위 뒤여야 하니 아마 17일 오후였을 것이다. 이 넷은 禪位에 찬성할 리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고른 최소 인원이다. 민체는 태종의 장인이고, 하윤 조영무는 정사·좌명 1등 공신으로 좌우정승이었으며, 이숙변은 태종을 정성껏 따르는 심복이었다. 따라서 이 넷은 신료들 가운데 태종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태종의 전위를 가장 나중에야 받아들일 사람들이었다. 여기에서 태종의 뜻이 전위 자체에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⁶⁾ 태종의 목적은 선위가 아니라 1차 왕자

11) 『태종실록』 권 11, 태종 6년 6월 경오(12일) 上御正殿 册封誠妃, 攝太尉議政府贊成事李淑, 攝司徒參知議政府事李原 奉冊寶先詣德壽宮, 上隨詣德壽宮 獻冊寶 行四拜禮, 世子禔與百官次行四拜訖, 遂還宮.

12)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기축(3일) 追謚故世子芳碩爲昭悼君, 撫安君芳蕃爲恭順君.

13)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경인(4일) 上詣德壽宮 起居

14)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신축(15일) 上詣德壽宮起居.

15)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甲辰(18일)(중략) 初 上以災異屢見 欲傳位世子禔, 密告驪興府院君閔霽, 左政丞河峯, 右政丞趙英茂, 安城君李叔蕃等, 峯等皆以爲不可, 上不從.

16) 전위 소동은 심각하고 진지한 극이었던 것 같다. 태종은 전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의 네 사람도 태종의 전위를 믿지 않았을 테니까. 태종 자신은 물론 위의 넷이

의 난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아울러 태종이 노리는 기대 효과는 태조를 감동시키고, 한양으로 옮겨와 불안하고 혼들릴 수 있는 인민의 마음을 왕을 중심으로 다잡는 데 있었다고 본다.

소동이 시작된 8월 18일에 義安大君 李和, 領議政府事 成石璘이 百官과 老者를 이끌고 殿庭에 班列하여, 知申事 黃喜로 하여금 들어가서 “전하께서 춘추가 한창이고, 세자가 나이 아직 성년이 못 되었고, 아무 변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傳位하시고자 하시니, 신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황공해 하고 있습니다.”¹⁷⁾고 아뢰게 하였다. 이에 태종은 “내가 아직 늙지 않고, 세자가 어린 것도 내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내가 전위하려는 까닭 같은 것은 두 정승이 이미 알고 있다.”¹⁸⁾고 하여, 南在 河峴 등과 논란을 벌인 뒤에 태종이 “오늘 꼭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 다시 생각할 터이니, 경들은 물러가는 것이 옳다.” 하여 날이 저문 뒤에 물러났는데, 도성의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고 하였다.¹⁹⁾

19일(을사)에 태종은 세자 서연관을 경연관으로 제수하여,²⁰⁾ 전위를 확인하고 드러내려 하였다. 成石璘 河峴과 權仲和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宮庭으로 나아가 거듭 청하였으나, 태종의 말이 달라지지 않자 불가함을 거듭 논하였다.²¹⁾ 태조에게

믿지 않은 태종의 전위를 다른 종친이나 신료들이 믿었을 리가 없다.

- 17)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甲辰(18일) 上欲傳位于世子禔 群臣固諫. (중략) 是日 義安大君和, 領議政府事成石璘 率百官耆老班殿庭 使知申事黃喜入啓曰 殿下春秋鼎盛 世子年未及冠 未有變故 遽欲傳位 臣等未知其由 罔不惶懼.
- 18) 주 17)에 이어서, 上曰 予之未老 世子之幼 予亦知之. 然予心已決 不可易也. 若傳位之故 兩政丞已知之矣.
- 19) 주 18)에 이어서, (중략) 峴在復啓曰 (중략) 上曰 非必欲傳於今日也. 予更思之 卿等可退. (중략) 日暮 群臣乃退. 都人聞者 皆失色震駭.
- 20)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을사(19일) 成石璘 河峴 劉敞 李來 柳觀 趙庸 皆解世子賓客之職. 與吉昌君權近 右軍摠制成石因·金瞻 俱授經筵官.
- 21)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을사(19일) 成石璘, 河峴 及 檢校領議政府事權仲和等 率百官進宮庭啓曰 前日所啓 未知宸斷, 願賜俞音. 上曰 予雖庸質 當此大事 豈敢顛倒妄作! 欲更商量. 石璘啓曰 前日上教吾更思之. 今日之教 復如前日 何也? (중략)

고하려고 가자 태종이 만류하며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여,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청하자며 물러났다.²²⁾ 20일(병오)에 成石璘 등이 다시 백관을 거느리고 殿庭으로 들어가 아뢰니, 태종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침맞고 뜰뜨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으니 5,6일 기다리면 정승들을 만나 자세히 말하겠다고 하였다.²³⁾ 이후 조영무와 이무 등이 울면서 거듭 아뢰었으나 태종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다.²⁴⁾ 남재 권근의 말을 황희가 아뢰니, 태종은 (承傳色 嘉希鳳을 꾸짖으며) 번거롭게 다시 들어와 아뢰지 말라고 하였다.²⁵⁾ 성석린 조영무가 지신사 황희에게 자기들이 말한 바를 낱낱이 다시 아뢰라고 하여 황희가 들어가니, 태종은 이미 세자에게 전위하였으니 말없이 물러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²⁶⁾ 하윤이 수상으로서 명을 받들지 않을 터이니 어떻게 전위하는 예를 이루겠느냐고 하자, 조영무도 죽더라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황희와 노희봉이 같이 内庭으로 들어갔으나 태종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우물쭈물 오래토록 감히 아뢰지 못하니, 태종이 전위의 어려움을 내가 이미 헤아렸다고 하였다. 성석린 등이 모두 이 말은 곧 윤허라고 하여, 사온하기를 청하니 태종은 짐짓 웃으며 그러하라 하였다. 군신들은 4배를 하고 천세를 부르고 4배한 뒤에, 기뻐하며 물러났다.²⁷⁾ 그날 밤에 태종은 몰래 노희봉을

22) 주 21)에 이어서, 嵋曰 如此則宜告于太上王. 遂率百官詣德壽宮 行至德成坊, 上遣黃喜止之 曰 卿等毋庸即告于父王. 予亦思之. 嵋曰 (중략) 是必改心易慮矣. 姑待明日 更請如何? 衆曰 然. 乃退.

23)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병오(20일) 成石璘等復率百官 入殿庭啓曰 臣等待命數日 尚未蒙允, 須煩再啓. 上使黃喜對曰 予思未決. 且近以針灸 未敢出, 請俟五六日, 親見老政丞 與政丞 備陳予意.

24) 주 23)에 이어서, 趙英茂泣曰(중략) 丹山府院君李茂亦泣啓曰(중략) 喜入啓 上對如前.

25)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병오(20일) 吏曹判書南在啓曰(중략) 天命人心 二而一者也. 人心之向背 天命之存亡繫焉. 宗親功臣百官臺諫合辭上請 殿下逆而不從, 斯乃逆天命矣. 吉昌君權近啓曰(중략) 世子氣力未壯 學問未成, 矢當萬幾 氣不能支煩劇 學不能應萬事. (중략) 喜入啓, 上對又如初. 復叱承傳色盧希鳳曰 母屑屑更入啓.

26) 주 25)에 이어서, 石璘等曰 奈何奈何? 清城君鄭擢啓曰(중략). 權近復啓曰(중략). 石璘英茂復謂喜曰 聖心雖謂得計 然群望不合, 宜枚舉臣等所言 一一更啓. 喜入, 上謂喜曰 非特有志於傳位也, 已傳位於世子矣. 外人雖多言 奚及! 莫若不言而退之爲愈也.

27) 주 26)에 이어서, 獨河峴沈思不言 及是乃啓曰 殿下制命非義 老臣備位首相 固當不奉教旨.

시켜 (尙瑞司 관원도 모르게) 國璽를 세자궁에 보냈다.²⁸⁾

21일(정미)에 종친 기로 대소신료가 예궐하여 상서하고 사간원 사헌부가 상언하였으나 태종은 모두 따르지 않았다.²⁹⁾ 성석린 등은 동궁으로 보낸 大寶를 환수하기를 거듭 청하였고, 태종은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라며 기정사실화하였다.³⁰⁾ 이때 신료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성석린은 ‘전위의 어려움을 나도 헤아렸다’ 하고 대보를 동궁에 전하여 실망했다, 하윤은 정종이 태종에게 선위할 때도 명에서 의심하였는데 반드시 크게 의심할 것이다, 李茂는 明帝가 집정대신을 불러 까닭을 물을 텐데 누가 가서 專對할 것인가, 南在는 內禪인데 어찌 은밀하게 할 수 있는가 등이다. 태종은 신료들의 말을 들여 아뢰는 황희에게 빨리 동궁으로 가서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 하윤 등이 바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편전의 문을 닫아버려서 방황을 오래하다 나왔다.

세자가 國璽를 받들어 正殿에 두고 아뢰기를 “신이 나이어리고 무지하여 감당하지 못합니다.”하니, 태종이 세자의 내관을 꾸짖고 재촉하여 국새를 세자에게 되돌리도록 하였다.³¹⁾ 이리하여 정전의 국새를 놓아두고 君臣이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 義安大君 和, 奉寧君 福根, 檢校領議政府事 權仲和 및 成石璘 이하가

誰與成傳位之禮哉? 英茂繼之曰 臣等雖死 必不聞命. 且日喜曰 知申事 忍欲從此命乎? 喜與希鳳偕入內庭 畏上震怒 遂巡畏縮, 久不敢啓. 上乃曰 傳位之難 予已量之. 石璘等咸曰 殿下此命 是乃允許也. 即使希鳳請謝恩, 上佯笑曰 諾. 河峴(중략)大聲唱喝 稽首四拜 三呼千歲聲震闕庭, 又四拜. 仍啓靜妃殿 四拜以謝, 群臣皆欣悅而退 以謂上真許之也.

- 28) 주 27)에 이어서, 夜二鼓, 上潛使盧希鳳 送國璽于世子宮, 尚瑞司官亦不之知.
- 29)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정미(21일) 宗親耆老大小臣僚 詣闕上書曰 (중략) 司諫院司憲府上言 (중략) 上皆不聽.
- 30)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정미(21일) (위에서 계속) 石璘啓曰(중략) 請收還大寶. 河峴曰(중략) 今殿下又遽釋位 則中國必大有疑焉. 傳位之事 尤爲不可也. 李茂啓曰(중략) 南在曰(중략). 黃喜入 具以啓, 上曰 事已如此 岂容改作! 予曾命卿歸東宮 尚何留於此乎? 速歸東宮 其勿復入來. 石璘,峴,李舒等欲更啓, 喜,希鳳皆不敢入復. 峴等欲直入親啓 至便殿之外, 門閉不得入, 徘徨久之乃出.
- 31)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정미(21일) 世子亦奉國璽 置于正殿, 使希鳳入啓曰 臣年幼無知 不敢當不敢當. 上使希鳳 責世子侍者內官黃稻曰 汝教世子耶? 稻對曰(중략) 奴何知! 上促命以國璽還于世子.

다시 殿庭에 들어와, 태종에게 세자의 禿避를 받아들이라고 청하였다. 승전색 노희봉이 이를 아뢰니, 태종은 크게 노하여 화살을 메겨 쏘려는 듯하니 노희봉이 황공하게 나왔다. 태종이 內奴를 시켜 국새를 취하여 들이려는데, 성석린 조영무 등이 대보는 천자가 내린 막중한 것인데 내노를 보내어 취함은 심히 불가하다 하며 상서사 관원에 명하여 받들어 들이라고 청하였다. 다시 내노들이 나와 국새를 정전으로 옮겨가려 하자, 조영무가 꾸짖고 상서사 관원과 의정부 知印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하윤이 세자에게 面辭를 권하자 세자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여, 하윤 조영무가 세자를 동궁으로 돌아가게 하였다.³²⁾ 세자를 돌려보낸 뒤에 다시 태종과 조영무 하윤 등의 논란이 있었다. 하윤이 전위하는 儀禮에 印章이 필요한데 세자에게 대보를 전해버리면 그 때는 어떤 인장을 쓰겠느냐고 하자, 태종은 국새를 세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왜 들여보내지 않느냐고 하자, 하윤은 들여 궁중에 두는 것이 신들의 원이라며, 상서사 관원으로 하여금 국새를 받들어 안으로 들이도록 하였다. 태종이 궁문을 닫으라고 명하니 군신이 몰려났는데, 저녁에 태종은 다시 國璽를 동궁에 보냈다.³³⁾

22일(무신)에 대간이 상소하였다.³⁴⁾ 群臣도 다시 예궐하여 국새를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나, 태종은 이미 주었다며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³⁵⁾ 그런데

32) 주 31)에 이어서, 於是 義安大君和奉寧君福根, 檢校領議政府事權仲和及石璘以下 復入殿庭 啓曰 臣等伏闕門外待命 今世子奉國璽而來 不敢當傳付之命, 臣等喜幸. 諸願殿下聽納世子之辭避. 希鳳入啓, 上大怒 注矢以擬之, 希鳳惶恐而出. 上使內奴數十人取國璽以入, 石璘英茂等 曰(中략) 今遣內奴而取之 甚爲不可. 宜命尙瑞司官奉入. 俄而 內奴復出 失色顚躡曰(中략) 欲直走正殿 取國璽而入, 英茂厲聲叱之曰 奴輩敢爾耶! 使尙瑞司官及政府知印共守之, 內奴不能奪. 嶠謂世子曰 宜入見面辭. 世子曰 上怒如是 予不敢入, 如何? 嶠曰 然則當還宮. 英茂令知通禮門事孫閏祖 侍世子而出.

33) 위 32)에 이어서, 上使中官傳旨曰(中략) 英茂對曰(中략). 嶠啓曰(中략) 今若傳大寶於世子 則當其時 用何印章爲信乎? 上曰 國璽既不許于世子 則何不入送于內乎? 嶠曰(中략) 入而置諸宮中 則臣等之願也. 乃使尙瑞司官 奉國璽入于內. 上以群臣紛紛 不欲更聞 命閉宮門, 群臣乃退. 是夕 復遣中官 由宮東門 送國璽于世子宮.

34) 『태종실록』권 12, 태종 6년 8월 무신(22일) 臺諫上疏

35) 『태종실록』권 12, 태종 6년 8월 무신(22일) 群臣復詣闕 使南在, 權近啓曰(中략) 諸願還國璽 待使臣之還 傳之以禮. 上使黃喜語之曰(中략) 若曰待使臣之還而傳位 則宜矣. 還受國寶則不

이날 분위기가 바뀌었다. 달라진 점은 신료들이 마치 전위를 받아들이는 척하여, 국새를 거두었다가 명 사신이 돌아가면 의례를 갖추어 전위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仁昭殿이 완성되어 경복궁 별전에 임시로 모시던 神懿王后 神御를, 그날 百官이 朝服으로 옮겨 모셨다.³⁶⁾ 또 태종은 대언 등을 보내어 복중의 權近에게 宮醴과 肉餚을 내렸다.³⁷⁾ 신의왕후 神御를 이안한 것은 23일(기유)이 태종의 庶母 神德王后의 忌辰이었기에,³⁸⁾ 그 하루 전에 어머니 신의왕후를 새 仁昭殿으로 옮겨 모신 것 같다. 신덕왕후 기신에는 처음으로 王[태종]의 庶母로서 예를 갖추어 齋戒하여 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24일(경술)에 태종은 광연루에서 종친을 불러 술을 마셨다.³⁹⁾ 이날 권근이 상서하여 고려 후말의 사례와 대명관계 등을 들어 전위가 불가함을 절절히 말하였다.⁴⁰⁾ 태종이 비록 윤허하지 않았으나 자못 감동하여 깨달았다고 하였다. 권근의 이 상서로 태종이 물러서도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8월 26일(임자) 비로소 世子에게 傳位하는 명이 없어졌다.⁴¹⁾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냥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전위 소동은 태종이 비밀리에 전위하겠다고 말한 데서 일어났다. 그 소동이 스러진 것도 이숙번을 불러 비밀리에 한 말로써 잡채워졌다. 이날 종친과 공신 기로 문무백관이 다시 창덕궁 뜰에 나아왔고, 세자도 國璽를 받들어 와 전에 두었다. 태종이 이숙번을 불러들여 밤마다 모후가 울며 “네가 나를 짊기려 하는구나.”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이숙번은 幼弱에게 傳位하면 종사를 보전하지 못하니 모후가 짊는다면 모후께서 전위의 불가

可. (중략) 崔泣曰 國璽 豈可使內豎潛傳之? 英茂亦泣曰(중략). 上曰 已與之矣, 豈可復取! 斷不聽卿言. 群臣乃退.

36)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무신(22일) 移安神懿王后神御于仁昭殿.

37)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무신(22일) 遣工曹判書李來右副代言尹向 賜宮醴乾獐生獐鮮魚于權近. 時 近尙在制中 以久病未愈 故賜肉膳也.

38) 『태종실록』 권 24, 태종 12년 8월 을해(23일) 神德王后忌晨. 始以代押文行齋祭.

39)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경술(24일) 御廣延樓 召宗親置酒.

40)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경술(24일) 吉昌君權近上書. 그런데 권근 상서의 결론을 뒤집으면 세자가 장성하고 민심이 모이면 전위해도 된다는 것이다.

41)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임자(26일) 始寢傳位世子之命. (중략) 又命兼尙瑞尹黃喜少尹安純 受國璽入置于司. 世子及群臣四拜 三呼千歲 又四拜而出.

함을 고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숙번이 나가서 대신들에게 고하여 대신들이 굳이 청하였고, 태종은 이숙번을 꾸짖고 바꿀 수 없다고 버텼다. 하윤이 明의 内史가 서울로 돌아오는 날에 의장을 갖추어 맞아야 하는데 國璽가 없을 수 없다고 하자, 태종은 한발 물러나 29일 인소전에 나아가 점을 친 뒤에 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하윤이 그날 위의에도 국새 없이는 불가하다고 하자, 태종은 국새를 받아 상서사에 들이라고 명하였다. 이렇게, 동궁에 보냈던 국새를 상서사에 들이라고 함으로써, 전위소동은 끝났다.

그런데 전위소동은 그날 26일에는 끝나야 했다. 27일이 방석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27일(계축) 태종은 昭悼君 芳碩과 恭順君 芳蕃에게 王으로서 제사지냈다.⁴²⁾ 태종이 즉위하고 처음이었다. 29일(을묘) 태종은 백관을 거느리고 모후의 神御를 이안한 인소전에 몸소 奠을 올렸다.⁴³⁾ 30일(병진) 태종은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함으로써, 전위 소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막을 내렸다.⁴⁴⁾ 이날 태조가 조용히 태종에게 이르기를 “나라를 전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왕이 내게 고하지 않으면 되는가? 하물며 왕의 수염과 머리가 이미 희었는가? 학문이 통하지 않았는가? 사리를 모르는가? 갑자기 물러나 편히 지내려 하니 또 무슨 뜻인가? 내가 백세한 뒤에는 마음대로 할지라도, 내가 죽기 전에는 다시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 태종이 “신이 홀로 들어와 모신 즉 부왕의 말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 태조가 지신사 황희를 불러들어 앞에 한 말을 갖추어 말하였다. 이리하여 태종은 바라던 바대로 태조의 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은 권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부왕 태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노력은 서울로 환도한 뒤에도 계속되었

42)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계축(27일) 遣判宗簿寺事鄭節 祭昭悼君芳碩, 奉常令李揚祭恭順君芳蕃.

43)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을묘(29일) 上率百官 親奠于仁昭殿. 以母后神御移安也.

44)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병진(30일) 上詣德壽宮起居. 初 (중략) 是日 太上從容謂上曰(중략) 且傳國國之大事 而王不告於予可乎? 況王鬚髮已白歟? 學問未通歟? 事理不識歟? 遽欲退安 亦何意歟? 值予百歲之後 任行自意. 未死之前 不欲更聞此言. 遂欲酌大卮罰之, 上啓曰 臣獨入侍側 父王之言 誰得知之? 太上曰 然. 卽召知申事黃喜入 具道前語.

다. 1398년 왕자의 난이 8월 하순에 일어났기 때문에, 8월은 태조와 태종 사이에 가장 불편한 달이었다. 왕자의 난 이후 한양에서 처음 맞는 1406년 8월은 더욱 그려하였을 것이다. 8월 초 태종이 이복 아우 방석과 방변을 追謚한 것은 태조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달래는 것이기도 하였을 터이다. 한가위의 덕수궁 문안은 정해져 있었고, 術者의 避方 건의도 이미 있었을 것이다. 8월 하순은 22일 母后 神懿王后의 새 仁昭殿으로 이안, 23일 庶母 神德王后의 忌辰, 26일은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날, 27일은 芳碩과 芳蕃의 忌日이었다. 그리고 신어를 이안한 인소전에 제사를 모셔야 하고, 그러면 덕수궁으로 태조를 뵈어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일정을 보면, 한양으로 옮겨온 뒤 첫 8월에 태종이 그 날들을 의식하며 소동을 만들고 또 풀었을 것임이 짐작된다.

한가위 때 태조를 뵙고 온 태종은 장인 閔霽와 좌우정승 河峴 趙英茂, 심복 李叔蕃을 불러 전위하겠다고 하였다. 18일부터 전위를 막으려는 소동이 벌어졌다. 태종은 19일에 서연관을 경연관으로 임명하여 수위를 높였고, 20일 밤에는 國璽를 몰래 세자궁으로 보내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22일 신의왕후를 인소전에 이안한 것을 계기로 바뀐다. 23일 즉위 후 처음으로 庶母 神德王후의 忌辰을 국가의 의례로서 제사지냈다. 24일 권근의 상서가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그날 26일에, 모후 신의왕후를 벼팀목 삼아 전위하겠다는 뜻을 접었다. 당시 태종의 신료들은 물론 도성의 인민들도 8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27일에는 태종이 관원을 보내어 그달 초에 追謚한 芳碩 芳蕃을 제사하였다. 28일에 피방 갈 안암동 집을 수리하도록 하였고,⁴⁵⁾ 29일에는 새 仁昭殿에 몸소 제사하고, 30일에 덕수궁으로 태조를 문안하였다. 태조에게 “죽기 전에 다시는 전위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꾸중을 들었다. 이 꾸중을 함으로써 태조의 마음도 조금은 풀렸을 것이고, 태종에게는 정말 듣고 싶은 것이었다. 그래서 굳이 지신사 황희를 불러들여 다시 한 번 꾸중 들어서 온 나라가 알게 하였다. 모든 신료와 도성의 인민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태종이 왕으로서 서모 신덕왕후와

45)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8월 갑인(28일) 命修葺安巖洞檢校戶曹典書金軾之家.

이복동생 방식 방번을 제사지내고 태조의 신임을 확인함으로써 전위 소동의 목적은 거의 달성되었다. 이제 왕자의 난으로 인한 태종의 짐이 조금은 덜어졌다고 하겠다. 부수적으로, 이듬해 7월 이후 媵戚[妻族] 閥無咎 閥無疾 형제를 축출하여 제거하는 빌미가 만들어졌다.

3. 원단 기우제의 告天

전위소동에서 고천까지 정국을 권위확충의 맥락에서 대강 정리한다. 1406년(태종 6) 10월 말에 호조에서 전국 각도의 호구수를 보고하였고,⁴⁶⁾ 12월에 수령을 고과하는 규정을 정비하였다.⁴⁷⁾ 1407년 1월에 백관의 祿科를 다시 정하였고,⁴⁸⁾ 3월에는 경차관을 보내어 민간의疾苦를 물고 각 관의營繕을 금하고, 兵船의 허실과 군사의 고락을 점고하게 하였다.⁴⁹⁾ 1406년 10월 종묘 친제 때 명에서 내려준 樂器를 처음 사용하였고,⁵⁰⁾ 11월 태종은 成均館에 나아가 文宣王에 친히 제사지냈으며,⁵¹⁾ 1407년 2월 文廟를 새로 짓도록 하여, 신위를 다시 모셨다.⁵²⁾ 4월에 廣延樓 아래서 文臣을 親試함으로써 문과 중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⁵³⁾

태종은 전위하였다 그만둠으로써 태조로부터 在位에 대한 지지를 확인받았다. 재위에 대한 지지가 즉위과정의 패륜과 잘못의 용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46)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10월 병진(30일) 戸曹上今歲諸道戶口之數

47)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12월 을사(20일) 司憲府上禁駕前直呈及守令褒貶之法 從之

48)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1월 신미(16일) 更定百官祿科

49)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1월 임술(16일) 分遣(中輅)于各道 問民間疾苦 禁各官營繕 乃點考兵船虛實軍士苦樂也

50)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10월 을미(9일) 上親裸于宗廟 始用朝廷所賜新樂器

51)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11월 기사(13일) 上詣成均館 上服衰冕平天冠 親奠于文宣王

52)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2월 기해(14일) 新作文廟 3월 을해(21일) 成均館 文廟成 5월 기미(6일) 奉安文宣王及四配神位於文廟

53)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4월 임인(18일) 親試文臣於廣延樓下

잘못은 유교윤리의 대강인 부자의 효와 형제의 우애, 군신의 의리의 문제다. 용서를 받는다면, 아버지이자 태조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모든 신료와 인민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 용서받는다 해도 그 잘못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1407년 태조의 나이는 73세였다. 태종의 마음은 여유로울 수 없었다. 태종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하늘에 고하여 왕권의 상징적 근원인 하늘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해소하려 하였다. 그것이 6월 말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올린 圓壇의 祈雨祭에서 告天이었다.

태종이 네 가지 죄로 고천하게 된 주요한 계기는 가뭄이었다. 고천하는 글은 곧 원단에 비를 비는 제문이다. 1407년에도 여름에 들면서 가뭄이 심해졌다.⁵⁴⁾ 5월 8일(신유) 가뭄으로 禁酒令을 내리고, 태종은 藥酒를 물렸다.⁵⁵⁾ 14일(정묘)에는 宗廟 社稷 北郊 昭格殿에 비를 벌었다.⁵⁶⁾ 태종의 탄일인 16일(기사)에 가는 비가 내렸다. 가뭄을 걱정하여 賀禮를 정지하고 2죄 이하를 용서하였다. 태종은 내가 덕이 없지만 魯桓公만 못하겠느냐? 君臣이 함께 걱정하여 비를 얻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찌된 것이냐고 신료들을 꾸짖었다.⁵⁷⁾ 21일(갑술) 하늘이 울었고,⁵⁸⁾ 22일(을해)에는 가뭄으로 求言하였다.⁵⁹⁾ 태종은 가뭄이 아주 심한데 육조판서가 朝啓에 나와서도 말이 없으니 앞으로는 본사에서 제 일이나 다하라 하

54) 이정철, 2013 「조선 태조·정종·태종연간 가뭄 기록과 가뭄 상황」, 『국학연구』 23, 한국 국학진흥원, 516면 〈표 2〉 가뭄에 따른 조치 시행일 및 520면 〈표 4〉 가뭄 지속기간을 참고.

55)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신유(8일) 下禁酒令, 卽輟藥酒 以旱也.

56)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정묘(14일) 禱雨于宗廟社稷北郊昭格殿.

57)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기사(16일) 微雨. 上之誕晨也. 憂旱停賀禮 宥二罪以下. 上謂左右曰 魯桓公春秋之罪人也. 水旱之災 間或免焉. 予雖否德 豈在桓公之下 而水旱之災 無歲無之, 何也? 予嘗憫雨 其於災異之事 無不觀究, 有君臣同憂而得雨者. 今乃不然, 何也?

58)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갑술(21일) 天鳴

59)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乙亥(22일) 求言. 上曰 旱氣太甚, 六曹判書雖詣闈朝啓 亦無所言. 今後坐本司 各盡其職. 遂召臺諫刑曹掌務問曰 今方盛夏 旱氣太甚. 寡人有失德歟? 宗親有不道歟? 抑大臣失於變理歟? 是必有致之者. 爾等職在言官 何無一言及此乎? 持平閔思正, 佐郎洪復興等對曰 致旱之由 臣等所不知, 儻有可言 豈堪緘默! (후략)

고, 대간 형조의 掌務를 불러서 내가 失德하였는가? 종친이 不道하였는가? 大臣이 變理를 읽었는가? 언관에 있으면서 한마디 말없이 이에 이르렀는가 하고 책하였다. 이에 대사현 성석인 등이 상소하여, 효는 온갓 행실의 머리로서 敬天 勤民의 實效가 모두 효에 말미암아 나온다면 태상왕[태조]께 더 지성으로 효도를 다하기를 건의하자. 태종은 태상왕을 효로 섬기는 것은 나의 본심이나 너희의 말이 내 마음을 아주 격려하여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고 하였다.⁶⁰⁾ 그날 반찬을 줄이고 궐내의 공상하는 비용을 덜어 줄였다.⁶¹⁾ 24일(정축)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였다.⁶²⁾ 25일(무인)과 26일(기묘)에 비가 와서, 의정부에서 약주를 올리자 허락했다.⁶³⁾

그런데 27일(경진)에는 큰비가 내려 京城의 하천과 도랑이 모두 넘쳤다.⁶⁴⁾ 이에 태종은 三省의 掌務를 불러 앞으로는 (자신의 허물은 물론) 대소 朝臣의 득실을 논하고 才德이 있으나 側陋한 자를 蘭進하도록 하였다.⁶⁵⁾ 홍수로 인하여 삼성에 또 求言한 것이다. 특히 대소 朝臣의 득실을 논하라고 한 것은 달라진 점이다. 이에 6월 초하루 계미에 三省에서 상소하자, 의정부에 내려 議得하게 하여 따랐다.⁶⁶⁾

다시 가뭄이 이어지자 6월 18일(경자) 육조 대간에 啓事하도록 다시 명하였다. 태종이 代言 權緩에게 이르기를, “두어 달 동안에 혹은 그치고 혹은 마시고 하니, 이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天譴을 당해 공경하고 조심하는 지극한

60) 위의 주 59)에 이어서, 大司憲成石因等上疏曰 (중략) 孝爲百行之首 敬天勤民之實, 皆由此出. 我殿下事親之孝 無有不至 而當視膳問安之際, 太上殿下或有不肯接見之時, 是殿下定省之禮 或有未盡其誠 不能感悟太上之心 而慈愛之道 猶有所缺焉耳. (중략) 伏望殿下盡其負罪引慝之誠 以致承順定省之禮. (중략) 上覽疏, 召持平閔思正曰 孝事太上 予之本心也. 汝等之言 殊激予心 予甚嘉之.

61)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을해(22일) 減膳, 省闈內供費.

62)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정축(24일) 上詣德壽宮 起居

63)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무인(25일) 雨: 기묘(26일) 雨. 議政府進藥酒, 許之.

64)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경진(27일) 大雨, 京城川渠皆溢.

65)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5월 경진(27일) 教三省盡言不諱. 召三省掌務曰 憲府請敬事父王 誠爲直言, 然自古言官 但言人主之得失, 若權貴與朝廷之過失 率不能舉 取笑古今. 自今在言責者 具言大小朝臣之得失, 蘭進有材德而在側陋者.

66)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계미(1일) 刑曹判書 金希善, 司憲府大司憲 成石因, 司諫院右司諫大夫 吳陞等 上疏. (후략)

뜻에 술을 그치지 않을 수 없다.”⁶⁷⁾고 하였다. 6월 21일(계묘)에 궁중에서 蜥蜴祈雨를 행하였으나, 효과는 없었다.⁶⁸⁾ 25일(정미) 육조와 대간을 불러 가뭄이 든 이유를 물었는데, 모두 둔전연호미와 외방 각관에서 명에 진현할 세저포 세마포를 책납하는 일을 말하였다. 태종이 다른 일을 말하라고 하자 대답하지 못하였다.⁶⁹⁾ 다시 대간의 장무를 불러, 태상전에 가서 哭泣하지 않은 것은 태상의 뜻을 받든 것이며 두 재상을 병용하는 것은 문무를 겸제하는 뜻이라고 해명하였다. 또, 태종이 둔전연호미법을 과하기를 굳이 청하는데 과하면 비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민원을 없애면 천의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하였다.⁷⁰⁾

6월 28일(경술) 태종은 영의정부사 成石璘을 보내 圓壇에 비를 빌었다. 權近이 지은 제문에서 태종은 네 가지 죄를 들어 자책하며 용서를 빌었다.⁷¹⁾ 前文은 天人感應을 바탕으로, 천명을 받은 왕으로서 德義를 그르쳐 天譴을 불렀으니 자책하여 하늘에 謝罪한다는 내용이다. 죄목으로 든 넷은 ①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同氣를 죽인 것, ② 1400년 2차 왕자의 난으로 懷安大君을 귀양 보낸 것, ③ 늙지 않은 정종을 압박하여 선위를 받은 것, ④ 1404년 10,11월에 李居易 부자를 추방한 것이다. 뒷부분은 자기 한 몸의 죄로 백성과 짐승 푸나무까지 괴롭히지 말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여 나라에 재앙이 되지 않게 하고 백성에게 병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제 태종이 죄목을 그 차례대로 검토해 보자.

67)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경자(18일) 復命六曹臺諫啓事. 謂代言權緩曰 (중략) 數月之間 或輟或飲 是欺天也. 然當此天譴敬謹之至 不可不輟也.

68)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계묘(21일) 行蜥蜴祈雨于宮中. (중략) 既二日不得雨.

69)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정미(25일) 召六曹臺諫 問致旱之由. 皆曰 屯田煙戶米及外方各官責納細苧麻布 衆所怨咨. 上曰 更言別事. 皆無以對.

70)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정미(25일) 召司憲掌令宋興持平安墓誌之曰 (중략) 予承父王之志 不敢有違. 爾等欲使我哭泣, 何哉? 又並用二相者 文武兼濟之意也. 興等曰 臣愚知不及此. (중략) 上更問曰 爾等堅請罷屯田煙戶米之法. 苟罷之, 爾等果可必其得雨乎? 興等對曰 臣等安知天意! 雨雖不可必期 然民怨除 則天意可回矣.

71)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庚戌(28일) 遣議政府事成石璘 禱雨于圓壇. 其祭文曰 (중략) 權近之辭也.

①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同氣를 죽인 것 : 父子, 兄弟

무인년에 太上이 편치 못하시매, 權臣이 어린아이를 끼고 宗支를 害하려 하여 禍變이 심히 급박하였습니다. 이에 한두 義士와 더불어 性命을 보존하고자 하여 군사를 들어 亂을 제거하였는데, 그 搶攘한 즈음에 害가 同氣에게 미쳐서 太上을 驚動시켜 그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죽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제 죄의 한 가지입니다.⁷²⁾

이것을 첫째 죄목으로 들었지만, 내용은 태종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다.⁷³⁾ 태조가 편치 못한 것을 틈타 권신이 어린 세자를 끼고 다른 왕자들을 해하려 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한두 의사들과 더불어 목숨을 보존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난을 제거하였는데, 정신없는 가운데 동기[이복동생인 세자와 무안군]를 죽이게 되어 태조의 마음을 경동시켰었다.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다른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다. 첫 죄목으로 들었기에, 이것이 태종을 가장 마음 깊은 테 서부터 괴롭혀 왔을 것이다.

② 1400년 2차 왕자의 난으로 懷安大君을 귀양보낸 것 : 兄弟

嫡子이고 長子이기 때문에 上王을 추대하매, 宗社가 안정되고 안팎이 편안하여졌는데, 臻臣이 또 懷安을 협박하여 군사를 믿고 난을 일으켜서 우리 형제를 이간하였으나, 다행히 義旅에 힘을 입어 곧 평정하였습니다. 懷安이 이로 말미암아 외방에 귀양 가 있어서 위로는 太上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래로는 宗親의 尊榮을 누리지 못하며 구류되고 울먹하여 罪囚와 같습니다. 이것은 公義에 있는 것이요, 내가 감히 사사로이 한바 아니나, 象憂의 마음에 있어 어찌 舜德의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제 죄의 두 가지입니다.⁷⁴⁾

72)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庚戌(28일) 遣議政府事成石磷 禱雨于圓壇. 其祭文曰 (중략) 歲在戊寅 太上不豫 權臣挾幼 圖害宗支 禍變甚迫, 乃與一二義士 欲保性命 稱兵除亂, 搶攘之際 害及同氣 驚動太上 以傷厥心. 盖迫畏死 出不得已 非有他心, 我罪一也.

73) 남지대, 2014 「조선 태종의 즉위과정과 내세운 명분」, 『역사와 담론』 69. 42~51면 참고

74) 위 주 72)에 이어, 以嫡以長 翊戴上王, 宗社載定 中外乂安, 不期姦臣又脅懷安 阻兵稱亂,

둘째 죄목으로 든 것은 2차 왕자의 난으로 회안대군이 귀양 간 것으로 내용은 역시 태종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다. 난의 원인을 간신이 회안대군을 협박하여 난을 일으켜 형제를 이간한 것으로, 난의 경과는 의로운 군대에 힘입어 바로 평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회안대군이 귀양 가서 태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종친으로서 존영을 누리지 못하였는데, 그 처리가 사사로움이 없는 공의였으나 스스로 더 우애를 다하지 못하여 부끄럽다고 하였다. 義旅의 도움으로 난을 진압하고 사사로움 없이 공의로 처리하였으나, 우애를 더욱 다하지 못함에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화를 넘어 은근한 자랑에 가깝다고 하겠다.

③ 늙지 않은 정종의 선위를 받은 것 : 君臣

上王이 아들이 없어, 제가 同母弟이고 또 開國과 定社에 功烈이 있다 하여, 세자로 삼아 장차 대통을 잇게 하려 하였습니다. 傳位할 때에 미쳐서는 늙은 것도 아니요 병든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갑자기 重器를 내놓았으니, 과연 上王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群情이 둘러싸고 ipp박하는 데 부대껴서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또한 감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제 죄의 세 가지입니다.⁷⁵⁾

셋째 죄목으로 든 것은 정종이 아들은 없어 자신이 세자가 되었으나, 아직 늙지도 않았고 병이 없던 정종의 선위를 갑자기 받았다는 것이다. 죄가 되는 사유는 정종이 선위한 것에 대하여 群情의 ipp박을 받았는지 그 까닭을 몰라 스스로 편안하지 못함이다. 태종이 정종을 압박하여 궁에 들여온 庶子를 내쫓고 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여 세자가 되었으며, 다시 궁궐을 무장해제함으로써 압박의 수위를 높여 선위하게 한 사실은 감추어졌다.⁷⁶⁾ 이 역시 죄목으로 들었으나, 실은 태종 자신은 사정을 잘 몰라 불안하다고 하며 선위 받음을 정당화한 것이다.

間我兄弟 幸賴義旅，隨卽平定。懷安由是謫在外服 上不得見太上之慈嚴 下不得享宗親之尊榮，拘留鬱抑 有同囚繫。是在公義 非予敢私，然在象憂之心 寧無舜德之愧！我罪二也。

75) 위 주 74)에 이어, 上王無嗣 謂予母弟 且於開國定社 與有勳烈，定爲世子 將俾繼統 及其傳位 非老非病 一朝無故 遽釋重器，未知果出上王之誠心歟？抑迫群情擁逼而然歟？予心至今未知其然 亦未敢以自安，我罪三也。

76) 남지대, 위의 논문, 51~60면.

④ 1404년 10.11월에 李居易 부자를 추방한 것 : 勳舊

上黨 父子는 저의 勳舊요 또한 저의 姻親인데, 말로써 坐罪되어 외방에 귀양 가 있어, 친속이 서로 떨어져서 편안히 살지 못한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동맹한 뜻은 제가 비록 잊지 않으나, 저 사람의 억울한 것은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죄의 네 가지입니다.⁷⁷⁾

넷째 죄목으로 든 것은 李居易 李旼 부자의 추방이다. 이거이는 定社 佐命功臣 1등공신이고, 큰 아들 李旼는 慶愼宮主와 혼인한 태조의 맏사위이자 定社 佐命功臣 1등공신이며, 둘째 아들 李伯剛은 定愼宮主와 혼인한 태종의 맏사위였다. 내용은 잘못한 말 때문에 귀양 가서 친속이 떨어져서 편안히 살지 못하는 것이다. 왕으로서 공신과 동맹한 뜻은 잊지 않고 있으나, 그들의 억울함은 자신의 죄라고 하였다. 이거이가 잘못한 말은 상왕[정종]을 섭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다. 1404년 10월 태종은 한양으로 서울을 확정한 뒤에, 종친 李和 李天祐에게 이거이의 말을 꺼내어 趙英茂와 대변하게 함으로써 이거이가 축출되도록 일을 만들었다.⁷⁸⁾ 여기서도 태종의 구체적인 행위는 감추어지고, 그들의 억울함을 헤아려 죄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태종을 정당화하고 있다.

죄목의 나열에 이어지는 용서를 비는 부분도 곧, 용서를 빔과 정당화를 등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종의 죄는 父子 兄弟 君臣 勳舊 사이에 있어서 그 道를 잃어 잘 처리하지 못한 네 가지 죄인데, 하늘이 이미 왕의 죄를 탓하지 않고 왕위를 주셨으니 이제와 지난 자신의 잘못으로 백성을 병들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다.⁷⁹⁾ 태종은 백성을 걱정함을 내세우는 한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77) 위 주 75)에 이어, 上黨父子 是予勳舊 亦予姻親, 乃坐言語 流竄在外, 親屬違離 不得寧居 亦已有年. 同盟之意 予雖不忘, 彼之鬱抑 岂可勝言! 我罪四也.

78)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10월 명술(18일) 命西原府院君李居易及其子上黨君旼 歸于其鄉 鎮州.

79) 위의 주 77)에 이어, 凡此四罪 其於父子兄弟君臣勳舊之間 皆失其道 不得善處, 良由不穀非德之致, 獲戾於天 以召災咎 誠所宜也, 何敢咎焉! 但愍小民飢饉荐臻 飛潛草木 皆至憔悴, 是誠何罪 先受其害? 念此痛傷 憂心如焚. 惟天聰明 罪福不差 胡寧忍此 具瘁以憲! 凡人一

로부터 왕위[天命]를 받은 군주임을 거듭闡明하고 있다.

1407년 6월의 심한 가뭄으로 圓壇에 祈雨祭를 올리면서 祭文으로 告天한 것은, 태종이 자신의 해묵은 잘못을 하늘에 고하여 용서받은 것으로 풀어버리면서,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왕위를 내려준 天命의 군주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앞 절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전위 소동으로 얻은 성과가 연이는 가뭄으로 퇴색하려 하자, 태종의 명분에 걸리는 네 가지 허물을 모두 하늘에 고하여 용서를 빙 것이라 하겠다. 이제 비가 내리면, 태종의 해묵은 잘못은 모두 지워지고, 허물을 하늘로부터 용서받은 천명군주임이 거듭 확인되는 셈이다.

4. 세자의 朝見 [1407.9.~ 1408.4.]

즉위과정에서 저지른 패륜들을 告天하여 풀어버린, 태종에게 남은 일은 세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세자 禟는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적장으로서 책봉되었고, 바로 明帝의 승인을 받았기에 이미 그 지위가 굳어졌다. 그러한 세자가 明에 朝見함으로써 세자로서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세자 朝見은 우연하게 결정되었다. 그 전에 세자와 명 황실의 혼인이 거론되었던 것 같으나, 1407년 6월 초 전송하는 잔치 자리에서, 명 사신 黃儼이 태종에게 권유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⁸⁰⁾ 黃儼이 술기운을 타 “世子께서 비록 장성하지 못하셨으나, 만일 덕이 있는 늙은 정승으로 하여금 좌우에서 보익하여 入朝하게 하면, 후히 대접하는 것은 제가 맡겠습니다.”하니 태종이 “다른 연고가 없다면 어찌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세자의 朝見은 사실상 결

朝之饗 一物之得, 皆關乎天, 非可妄干. 況以眇然之軀 君臨一國 多歷年所, 非賴上天之命 其可一日而濫據乎? 天既不以予爲有罪 以付一國神器矣. 豈可不釋其罪 以予一身之故 而病一國之民命乎? 惟願上天 聰明降監 諒我之誠 恕我之罪, 不災于國 不病于民.

80)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戊子(6일) 黃儼奇原等還 (중략) 上餞儼等于盤松亭.(중략)
儼乘醉告于上曰 世子雖未壯 若使有德老相 辅翼左右 使之入朝 則交接之厚 我能任之. 上對曰 若無他故 敢不惟命.

정되었다. 그 직후에 세자와 명 황실과 통혼하는 문제를 두고, 君臣 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⁸¹⁾ 지난 번 논의에서 태종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다시 몇 신료가 몰래 논의하였다가, 그것이 태종에게 알려져 그들을 모두 순금사에 내려 국문하였던 것이다. 이어 6월 하순에는 사역원 판관을 요동에 보내어, 세자가 朝見 하는 賀正使의 일정을 9월 초에 출발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⁸²⁾

태종은 명 황실과 세자의 통혼을 염려하여, 세자가 명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세자의 길례를 서둘렀다. 世子吉禮色은 전 해(태종 6년) 윤7월에 설치하였다.⁸³⁾ 세자는 열 네 살이었는데, 조현이 결정되고 난 뒤, 7월 중순에 婚禮를 치렀다.⁸⁴⁾ 이때 태종은 金漢老를 불러 孝悌忠信을 강조하며 삼가기를 당부하고, 아울러 사위[세자]를 오직 忠君弟長으로 가르치기를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8월 초에는 세자를 따라 入朝하는 관원이 정해졌다.⁸⁵⁾ 추석에는 세자로 하여금 인소전의 추석 별제를 대행케 하였다.⁸⁶⁾ 이것은 명절을 맞아 조현하려 갈 세자로 하여금 할머니 신의왕후의 제사를 모시게 함으로써 ‘신의왕후=태상왕[太祖]’- 今上[太宗]- 世子로 이어지는 왕통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9월 초에 세자가 태조에게 조현하려 감을 고하였고,⁸⁷⁾ 이어 7일(정사)에 千秋使 盧閏이 의주에 도착하여 明帝가 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⁸⁸⁾ 明帝는 천추사 노한 등에게 세

81)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경인(8일), 계사(11일), 을미(13일) 좌우정승을 改下批 임인(20일) 사간원상소.

82)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계묘(21일) 遣司譯院判官林密 如遼東咨曰 謹見世子進賀正朝, 擬於九月初頭起程, 欲要經由陸路前去, 煩爲轉達朝廷, 許令北京往來.

83) 『태종실록』 권 12, 태종 6년 윤7월 갑자(7일) 置世子吉禮色.

84)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7월 壬戌(11일) 以西川君韓尙敬爲納徵使, 摠制趙休副之. 藝文館大提學成石因爲告期使, 提學孟思誠副之. 世子納徵之禮 馬二匹 幢十束; 계해(12일) 遣大臣 以世子吉禮 告宗廟; 甲子(13일) 微雨. 世子親迎于前摠制金漢老之第; 병인(15일) 封金氏爲淑嬪, 拜其父漢老爲左軍同知摠制, 母全氏爲善慶宅主.

85)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8월 기축(8일) 賦世子隨朝官米布有差, 備治裝也.

86)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8월 병신(15일) 命世子行秋夕別祭 于仁昭殿.

87)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을묘(5일) 世子詣德壽宮, 告將朝見也.

88)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정사(7일) 賀千秋使盧閏等 還至義州 馳報曰 帝許世子朝見. (중략) 上聞之喜甚. 左政丞成石磷等詣闕賀.

자가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 북평부의 길을 경유하여 오도록 하라며, 돌아갈 때에 그 길로 가서 도로를 살펴보고 돌아가 국왕에게 보고하라고 하였다. 태종은 이를 듣고 대단히 기뻐하였으며, 좌정승 성석린 등이 하례하였다. 16일(병인) 의정부에서 세자전에 나아가 잔치를 올렸는데 따라갈 재상과 집사들이 참여하였고,⁸⁹⁾ 17일(정묘)에 상왕이 세자를 불러 전송연을 베풀었으며,⁹⁰⁾ 21일(신미)에는 의안대군 이화 등 종친이 세자전에서 전송연을 벌였다.⁹¹⁾ 세자는 9월 24일(갑술) 종묘 인소전 덕수궁[태조] 인덕궁[정종]에 나아가 조현을 고하였는데, 조현에 따라가는 신료들이 모두 뒤따랐다.⁹²⁾ 25일(을해)에 세자는 하정사로 떠났다.⁹³⁾ 이날 예조에서 세자가 조현 가는 도중에 차려야 할 예도를 상정하였다.⁹⁴⁾

세자는 10월 16일(병신)에 요동에 도착하였는데, 요동도사에게는 세자를 잘 영접하라는 황제의 칙유가 이미 내려져 있었다.⁹⁵⁾ 1408년 2월 초에 서장관이 세자가 京師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⁹⁶⁾ 2월 하순에는 세자를 맞이하러 철성군 李原을 요동으로 보냈고,⁹⁷⁾ 3월 초에는 세자의 수종관이 돌아와 세자가 무사히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려, 의정부가 백관을 이끌고 예렬하여 진하하였다.⁹⁸⁾ 4월 2일

89)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병인(16일) 議政府詣世子殿設宴, 隨朝宰執與焉.

90)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정묘(17일) 上王召世子餞之.

91)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신미(21일) 義安大君和及諸宗親, 設餞宴于世子殿.

92)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갑술(24일) 世子詣宗廟仁昭殿及德壽宮仁德宮, 告將朝京也. 隨朝諸臣皆從之.

93)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을해(25일) 遣世子禔如京師, 賀正也. 以世子爲進表使, 完山君李天祐副之, 右政丞李茂爲進箋使, 雞城君李來副之. (후략)

94)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9월 을해(25일) 禮曹詳定世子朝見路次禮度以聞.

95)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10월 병신(16일) 世子禔至遼東, 捏兵官保定侯孟善, 都指揮使高得, 內官王彥金春山等 遣人郊迓, 館待設宴, 皆極其厚. 留四日而行. (후략)

96)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2월 계미(4일) 賦陳慰使書狀官朴剛生(중략)等回自京師, 備啓世子赴京, 皇帝接待優厚之狀. 上悅.

97)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2월 신축(22일) 遣鐵城君李原迎世子于遼東.

98)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3월 경술朔 世子隨從官上護軍李公孝, 判軍器監事郭海龍回自京師, 啓以皇帝接待之厚 賞賜之隆. 世子於正月十六日發南京, 二月十七日到北京, 安穩回還. 上喜甚, 各賜鞍馬, 靜妃亦各賜帛一匹. 議政府率百官詣闕陳賀.

(경진) 세자가 서울로 돌아오자, 태종은 크게 환영하고 광연루에서 잔치를 벌여 환영하였다.⁹⁹⁾ 태종은 7일(을유)에 광연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돌아온 세자 일행을 위로하였다.¹⁰⁰⁾

세자가 조현하러 떠난 뒤, 10월 초 태종은 둘째아들을 효령군으로 책봉하였다.¹⁰¹⁾ 1408년 2월에 하윤을 영의정부사 世子師로, 성석린을 좌정승 世子傅로 삼아,¹⁰²⁾ 돌아오는 세자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1408년 1월초에 좌정승 성석린 등의 상언에 따라 의정부의 서무를 육조로 돌렸다.¹⁰³⁾ 의정부[도성] 사무를 조례가 있고 큰일이 아니면 아울러 육조에 맡기고 條貫을 고치거나 대체에 관계되어 육조에서 오로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1월 중순에 태조가 풍질을 얻고 난 뒤,¹⁰⁴⁾ 2월 초에 좌우정승이 다시 이병조 판서를 겸함으로서 조정되었다.¹⁰⁵⁾

세자의 조현으로 세자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먼저 종친과 신료들이 세자를 떠나보내고 맞이한 의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떠날 때는 의정부 육조 삼공신은 길이 끝나는 南郊에서, 義安大君 和는 宗親을 거느리고 臨津渡에서 餞送하였고, 清平君 李伯剛, 參知議政府事 朴信, 前內侍府事 金琬은 요동까지 호송하였다.¹⁰⁶⁾ 맞이할 때는 鐵城君 李原이 요동으로 마중 나갔고, 서울로 들어올 때는 좌

99)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4월 경진(2일) 世子褪回自京師 街巷結綵 左政丞成石璘六曹判書等 出迎于城西石積之郊 功臣安平府院君李舒等 迎于迎曙驛東郊 耆老領議政府事致仕權仲和等 迎于洪濟院西郊 各司一員迎于盤松亭 上御廣延樓 置酒以迎慰之. 이어 세자의 조현 때의 일[京師 도착~ 하직]이 정리되어 있음.

100)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4월 을유(7일) 置酒廣延樓 勢世子之還也 隨朝宰樞侍從官皆與焉.

101) 『태종실록』 권 14, 태종 7년 10월 계미(3일) 封第二子祐爲孝寧君.

102)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2월 경인(11일) 封第三子爲忠寧君 以晉山府院君河峴領議政府事世子師 左政丞成石璘世子傅.

103)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1월 임자(3일) 始以議政府庶務 歸之六曹.

104)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1월 무진(19일) 上詣德壽宮 太上王暴得風疾.

105)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2월 계미(4일) 復以左政丞成石璘兼判吏曹事 右政丞李茂兼判兵曹事

106) 위의 주 94)와 같음.

정승 成石璘과 六曹判書 등이 城西 石積의 교외로 나가 맞았고, 공신 安平府院君 李舒 등이 迎曙驛 東郊에서 맞이하였고, 耆老 領議政府事致仕 權仲和 등이 洪濟院 西郊에서 맞이하였으며, 각司의 1월씩이 盤松亭에서 맞이하였다.¹⁰⁷⁾ 이렇게 종친 공신 백관이 보내고 맞이하는 의례를 행함으로써 세자의 존재와 중요성이 인민에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세자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고 그 중요함이 드러날수록, 태종의 왕으로서 권위도 그만큼 안정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태종이 조현하고 돌아온 세자를 데리고 함께 다닌 것과 세자가 사신을 응접하는 등의 활동을 보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4월초 태종은 세자를 거느리고 모화루의 공역을 살펴 본 뒤 서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한 뒤에 돌아왔다.¹⁰⁸⁾ 4월 중순 명 사신의 칙서를 태상왕이 질병으로 받을 수 없자 세자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였고,¹⁰⁹⁾ 다음날부터는 세자로 하여금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날마다 문안하도록 하였다.¹¹⁰⁾ 하순에는 태상왕이 세자를 태평관에 보내어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고,¹¹¹⁾ 명 사신 黃儼 등이 금강산 유람을 갈 때도 세자가 흥인문 밖에서 전송하도록 하였다.¹¹²⁾

이와 같이 세자의 조현과 조현 뒤의 활동으로 세자의 위상이 안정되고 역할이 드러남에 따라, 그만큼 태종의 왕으로서 권위도 높아지고 더욱 확충되었을 것이다.

107) 위의 주 97) 태종 8년 2월 신축(22일)과 101) 4월 경진(2일)

108)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4월 병술(8일) 上率世子觀慕華樓之役, 遂如西郊 觀放鷹而還. 時太上之疾稍愈.

109)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4월 갑오(16일) 黃儼等又齋勅書 如太上王宮. 太上以疾不能迎命 使世子視代受勅命.

110)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4월 을미(17일) 命世子如太平館 問安於使臣也. 世子之朝京也 儼日到所館 待之特厚, 故其來也 世子日至館問安.

111)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4월 기해(21일) 太上王遣世子如太平館 宴使臣.

112) 『태종실록』 권 15, 태종 8년 4월 계묘(25일) 黃儼, 田嘉禾, 海壽, 奇原及陳敬 請遊金剛山, 命世子餞于興仁門外.

5. 맷음말

이상에서 한양 환도하기까지 왕권을 확립한 태종이 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한 짐을 덜고 즉위과정에서 빚은 허물을 하늘에 고함으로써 해소하였으며, 세자의 조현으로 왕으로서 권위를 확충하였음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검토는, 태종 중심의 단선적인 한계가 있으나, 다시 정리하여 맷음말로 삼는다.

1406년(태종 6) 8월 중순 세자에게 전위하겠다 하여 벌어진 소동은, 태종이 8월 하순의 일정을 염두에 두고 1차 왕자의 난의 짐을 덜기 위해 벌인 것이었다. 덕수궁을 새로 짓고 후궁을 비로 책봉함으로써 태조와 관계를 더욱 개선한 뒤, 8월 초에 태종은 방석과 방변에게 追謚하였다. 1406년의 8월이 1차 왕자의 난 이후 한양에서 처음 맞는 8월이었다. 한가위에 태조를 뵈었으나 1차 왕자의 난으로 빚은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에 태종은 세자에게 전위하겠다고 하여, 왕자의 난으로 얻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아직 전위할 수 없다는 것은 태종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종친 공신 대간 백관의 반대에, 모후 神懿王后의 신령함을 드러내며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바로 그 날 전위하겠다는 뜻을 접었다. 소동의 와중에서 서모 神德王后的 제사를 왕으로서 처음 지냈고, 전위의 뜻을 접은 다음날에는 追謚하였던 방석 방변의 제사를 지냈다. 8월 30일에 태조를 찾아뵈었는데, 태조가 생전에 전위한다는 말은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태종을 꾸중하였다. 아마 이것은 태조가 태종의 재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말 같다. 전위 소동을 벌여 온 신료와 인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어머니 신의왕후의 신령함을 드러내고, 처음으로 왕으로서 서모 신덕왕후와 죽인 이복동생들을 忌日에 제사지냈으며, 태조로부터 재위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태종은 1차 왕자의 난으로 빚은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백관의 지지는 물론 한양으로 옮겨와 첫해를 지내는 도성 인민들의 마음도 왕 중심으로 다잡았을 것이다.

전위 소동으로 종친 공신 백관은 물론 부왕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1407년에도 다시 심한 가뭄이 닥쳤다. 이에 태종은 하늘이 자신의 지난 잘못에도 천명을 내렸으니, 이미 왕이 된 지 여러 해 된 지금까지 재이와 가뭄으로 백성을 굶주리고 병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늘에 죄와 허물을 고하여 용서를 빌었다. 告天하여 하늘에 용서를 비는 것은 백성을 담보로 하여 지난 허물에서 벗어나고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네 가지는 1차 왕자의 난 때 동기를 주이게 되어 태조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2차 왕자의 난으로 형을 귀양 보낸 것, 정종의 선위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모름, 공신 인척인 이거이 부자를 숙청한 것이었다. 천명을 받은 군주로서 심한 가뭄을 당하여 백성의 굶주림을 걱정하고 아파하며 자신의 묵은 죄와 허물을 하늘에 고하여 덜어지움으로써, 태종은 백성을 위하는 천명의 군주로서 권위를 확충하였다고 하겠다.

세자의 조현은 태종의 왕위 재확인과 천명 군주로서 권위의 확충을 더 안정 강화한 일이었다. 세자의 조현은 황제가 인정한 세자임을 온 천하에 밝게 드러내었다. 세자의 위상이 더욱 굳어지고 역할이 커짐에 따라, 태종의 왕으로서 위상은 그 만큼 더 안정되고 권위는 확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자에게 전위하려다 그만둔 일, 즉위과정의 해묵은 허물 등을 告天하여 풀어버림과 세자의 조현으로 태종의 왕위는 재확인되고 왕으로서 권위는 확충되었다. 그 한 증거가 1408년 정월 초에 전례 있는 서무는 모두 육조로 돌리고 법규를 고치거나 대체에 관계되어 육조에서 오로지하지 못하는 것만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왕 중심의 육조체제가 내용을 갖춘 것이다. 태종에게는 이제 태조가 죽은 뒤 삼년상으로 효를 완성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

논문투고일(2014. 10. 1),	심사일(2014. 11. 20),	개재확정일(2014. 12. 5)
---------------------	--------------------	--------------------

참고문헌

『太宗實錄』

- 崔承熙, 1991 「太宗朝의 王權과 政治運營體制」, 『國史館論叢』 30, 國史편찬위원회
[2002 『朝鮮初期 政治史研究』(지식산업사)에 재수록]
- _____, 2002 「太宗末 世子廢立事件의 政治史的 意義」, 『朝鮮初期 政治史研究』, 지식
산업사.
- 남지대, 2013 「조선 태종의 王位와 王統의 정당화」, 『한국문화』 63,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문화연구원
- _____. 2015 「조선 태종의 王權 확립」, 『역사문화연구』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
문화연구소(투고)
- _____. 2014 「조선 태종의 즉위과정과 내세운 명분」, 『역사와 담론』 69, 湖西史學會.
- 이정철, 2013 「조선 태조·정종·태종연간 가뭄 기록과 가뭄 상황」,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Abstract

The Reinforcement of Regal Authority by King Taijong

Nam Jidae

Having secured his regal authority, Taijong went on to cause a heated commotion in the court by declaring that he would soon abdicate the throne in favor of the Crown Prince. The ulterior motive for that declaration was to mitigate the damage done to his moral integrity by the role he played as a royal prince in the first violent power struggle with his step-brothers. He further tried to clear himself of the sins he had committed during the process leading up to his accession to the throne, by confessing the sins to Heaven.

The commotion of August 1406 revolving around the avowed abdication of the throne was deliberately given rise to by Taijong in order to ease the moral damage he suffered on account of his involvement in the above power struggle among royal princes. It had been less than a year since the political conflict that the commotion transpired. By declaring that he would at once step down from the throne in favor of the Crown Prince, he actually made himself appear to be ready to give up all the advantages he might have taken of the conflict. In the midst of this turmoil he held a memorial service for his deceased step-mother Sindeok Wanghu for the first time after he came to the throne. One day after he repealed the decision to step down from the throne he also held a memorial service for both Bangseok and Bangbeon, his step-brothers who were killed by him in the political conflict noted above. As a consequence of these measures, he could obtain Taijo's reaffirmation of his support of Taijong's rulership. All in all, the commotion stirred up by the avowed abdication of the throne, the performance of memorial services for his step-mother and step-brothers before the eyes of the people of Hanyang, and the following Taijo's reaffirmation of his support of Taijong's rulership were of great help in relieving Taijong of his responsibility for the above political conflict.

The year of 1407 witnessed another severe drought. This led Taijong to pray for Heaven's pardon for his past sins and wrongdoings. He also prayed to Heaven for its benevolence and mercy that would protect the people from famine and disease brought about by the drought, reminding it of its past benevolent bestowal of a mandate from Heaven on him despite his sins. By demonstrating his concern and sympathy for the people who were suffering from severe drought and ensuing famine, Taijong attempted to expand his support base. He would have been seen in the eyes of the people as a ruler who had received a mandate from Heaven and were deeply concerned about people's livelihood.

The dispatch of the Crown Prince to Beijing and his having audience with the Chinese emperor had the twofold effect of rendering the setting up of the Crown Prince legitimized by the Chinese emperor and of making this diplomatic feat widely known. This diplomatic achievement, with its domestic reverberations, must have greatly boosted Taijong's prestige as a ruler and reinforced his regal authority.

In this way the legitimacy of Taijong's rulership was reaffirmed and his regal authority was strengthened.

Key words : Taijong, commotion focusing upon the abdication of the throne, appeal to Heaven, ruler who received a mandate from Heaven, the Crown Prince's audience with the Chinese emperor